##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3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김선교·송석준·김예지

서천호 • 구자근 • 김상훈

최보유 • 김성원 • 박덕흠

김위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법률 제 호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유지·보수"를 "유지·보수(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	4
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u>유지·보수</u> 에 관한	<u>유</u> 지 · 보수(항로 ·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u>설을 포함한다)</u>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